

대법원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 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사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①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이를 다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②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음(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재림교 교인임
-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원고는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시험에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됨
- 이에 원고는 피고(전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순번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지정할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함(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거부행위 및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원고 패
 - 원고에게 입학시험의 결과가 아닌 그 절차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사항인 면접시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 부분 각하
 -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접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일정 변경 거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부분 기각

■ 원심: 원고 승

- 이 사건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확대라는 측면 등에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함 ⇨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 부분 인용
- 위법한 이 사건 거부행위에 따라 원고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도 위법함 ⇨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 인용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가 본안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재림교 신자인 원고의 면접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 부분 파기자판, 원고 항소기각**(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하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므로, 파기·자판하여 항소기각)
-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상고기각**(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다. 판단 근거

▣ 이 사건 거부행위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 피고가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일정을 지정하고, 그 면접일정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선발이라는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인 행위임
- 전남대 법전원 입학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피고가를 위해 앞서 하였던 단계적 행위는 그 종국적인 불합격처분에 흡수됨
-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불합격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거부행위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별도로 다룰 소의 이익이 없음 ⇨ **이 사건 거부행위 취소청구 각하 : 파기·자판**

▣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법리

-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됨
-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함
- 따라서 전남대 법전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 원고에 대한 면접일시가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됨으로써, 재림교 신자로서의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원고는 전남대 법전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데, 그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이 높으므로 특정 응시자에 대하여만 시험일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다른 모든 응시자의 시험일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이 큼
- 그러나 원고에 대한 면접평가의 경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원고 개인의 면접시간만을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
- 또한 피고는 면접대상자를 격리한 상태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므로, 원고가 일몰 후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낮은 순번으로 면접순번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가 면접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인용 : 상고기각**

4. 판결의 의의

- ▣ 안식일을 엄수하는 재림교 신자들은 토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데, 재림교 신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시험일정의 변경을 구한 청구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각된 바 있음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마399 결정 : 법학적성시험을 일요일에만 시행하도록 한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의 위헌 여부 (합헌)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41 결정 : 사법시험을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에 실시하도록 한 사법시험계획공고의 위헌 여부 (합헌)
-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71 결정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위헌 여부 (합헌)
- 이 사건은 재림교 신자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그 시험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있음
-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임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중 토요일로 지정된 해부학 시험 일자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19. 1. 31. 자 2018두60564 판결(주심 대법관 이동원)이 있었으나,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었음]
-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